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최연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77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7. 4.

발의자 : 최연혜 · 조경태 · 곽대훈

박대출 · 정운천 · 김정재

권석창 · 김도읍 · 이명수

이채익 · 경대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게 됨.

그럼에도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에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과 중복 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.

따라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의 절차에 따르게 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6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).

법률 제 호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3조(과태료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자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.</u></p> <p><u>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</u></p>	<p>제63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